



##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2024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제57호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고려 사항:

- a.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의 사용으로부터 사람의 안전,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산업의 경쟁력,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며, 공정한 사업 경쟁을 조성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을 규정한다.
- b. 액화석유가스(LPG)용 가스레인지 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는 산업부 장관령 제75/M-IND/PER/9/2015호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현행 산업 표준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c. 위에 언급한 a, b의 고려 사항 및 2014년 제3호 산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제6호 법률로 개정된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2년 제2호 정부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
1.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17조제3항
  2. 2008년 행정각부에 관한 법률 제39호  
(2008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66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4916호) 및 이를 개정한 2024년 행정각부에 관한 법률 제61호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25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994호)
  3. 2014년 인도네시아 산업법 제3호  
(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5492호)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2년 제2호 정부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조항에 따라 2023년 제6호로 개정되었다.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1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856호)
  4.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0호  
(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16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5584호)
  5.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2호  
(2017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016호)
  6. 국가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관한 2018년 법률 제34호  
(2018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10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225호)
  7. 산업 분야의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8호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38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640호)는 2023년 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었으며, 이 정부령은 산업 분야의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8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1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속서 제6891호)
  8. 산업부에 관한 2020년 대통령령 제107호

(202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54호)

9. 산업 표준화에 관한 2022년 산업부 장관령 제45호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120호)
10. 인도네시아 산업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23년 산업부 장관령 제8호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384호)

이에 다음의 규정을 채택하는 바이다.

규정: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장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이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를 관掌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이 제정한 표준 규정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LPG)란 저장, 운송 및 취급의 용이성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액화시킨 탄화수소 가스로서, 기본적으로 프로판( $C_3H_8$ ), 부탄( $C_4H_{10}$ )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물로 구성된 가스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이하 "고무호스")란 가황 처리된 고무 재질로 제작되고, 섬유 또는 금속 와이어 재질로 보강하고, 외부에 피복 층을 입힌 호스로서, LPG 용기에서 가스레인지로 가스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호스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산업체로서, 단독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산업체란 고무호스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6. 해외 제조업자란 고무호스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외에 소재한 개인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7. 공식 대리인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로서, 해외 제조업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회사 대리인이란 상표의 해외 소유자인 사업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어 소재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말한다.
9. SNI 인증서란 액화석유가스(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 규정에 따라, 고무호스를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제품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10. SNI 마크란 SNI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를 관장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이 정한 인증 표시를 말한다.
11.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란 통계 분야의 정부 사무를 관장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이 정한 산업 분류 코드를 말한다.
12. SNI 마크 사용 승인서(SPPT SNI)란 산업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발급한 SNI 마크 사용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13. 상표 협력 계약이란 고무호스를 생산하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 협력 제공자'로서, 다른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상표를 제공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생산하는 고무호스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제공자 의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위탁 계약이란 산업체가 아닌 사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가 상표 소유자이자 제공자로서,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고무호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위탁 생산 형태의 협력 계약을 말한다.
15.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 Nas)이란 기관,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망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된 절차 및 운영 체계로서, 산업 관련 데이터 및/또는 정보의 전달, 관리, 제공, 서비스 및 확산을 목적으로

로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제품인증기관(LSPro)이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산업용 재화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의무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시험소란 의무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제품 샘플에 대한 품질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인증된 기관을 말한다.
18. 국가인정위원회(KAN)란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accreditation)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비구조적 기관을 말한다.
19. 사후관리란 적합성 선언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의 체계적인 반복 절차를 말한다.
20. 산업표준 감독관(PPSI)이란 산업 분야의 표준 적용 또는 의무 적용 이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21. 장관이란 산업 분야에 관한 정부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을 말한다.
22. 기관이란 산업부 소속으로 중간 고위급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 단위로서, 산업 표준화에 관한 조정, 기획, 적용, 의무 적용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3. 기관장이란 산업부 소속의 중간 고위급 공무원으로서, 산업 표준화에 관한 조정, 기획, 적용, 의무 적용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의 범위

## 제2조

- (1) SNI 7213:2014 고무호스에 대한 표준을 의무 적용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고무호스는 부속 장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고무호스 제품으로서 다음 세번부호(HS 코드)를 가진 제품을 말한다.

- a. Ex. 4009.21.90
  - b. Ex. 4009.22.90
  - c. Ex. 4009.31.99
  - d. Ex. 4009.32.90
  - e. 4009.41.10
  - f. 4009.42.20
- (3) 제2항에 명시된 부속 장치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호스 커버
  - b. 호스 클램프
  - c. 호스 캡
  - d. 호스 커버 캡
- (4) 제2항에 명시된 고무호스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국내 생산품 및/또는 수입품을 포함한다.

### 제3조

- (1)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은 다음의 고무호스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a. 기술적 특성상, 의무 적용 대상인 표준과는 적용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이 상이한 별도의 표준이 적용되는 동종 제품인 경우
  - b. SNI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
- (2) 제1항제b호에 명시된 고무호스는 판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 (1) 제3조제1항제a호에 따른 고무호스의 적용 예외는 고무호스 산업에 대한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부 소속 사무국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 (2) 제3조제1항제b호에 따른 고무호스의 적용 예외는 장관이 지정한 LSPro가 발급한 샘플 채취 조서 및 시험용 샘플 라벨 문서로 입증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고무호스 산업에 대한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부 소속 사무국장이 정한다.

### 제5조

- (1)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고무호스를 제조, 수입 및/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고무호스의 SNI 의무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
- (3) 제2항에 따른 형사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형사 제재는 SNI 인증서 및/또는 SPPT SNI의 취소도 함께 이루어진다.
- (4) 제3항에 따른 SNI 인증서의 취소는 기관장의 권고에 따라 해당 SNI 인증서를 발급한 LSPro가 시행한다.
- (5) 제3항에 따른 SPPT SNI의 취소는 기관장이 시행한다.

### 제3장

#### 적합성 평가

#### 제1부 총칙

### 제6조

- (1) 제2조에 따른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의 이행은 유형 5(오) 인증 체계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유형 5(오) 인증 체계에 의한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 a.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및 생산 공정에 대한 감사 절차, 그리고
  - b. 제2조제1항에 따른 SNI의 규정에 따른 품질 적합성 평가
- (3) 제2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SNI 인증서의 형태로 발급된다.

### 제7조

- (1) 제6조제2항제a호에 따른 심사는 LSPro가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LSPro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제2조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의 범위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 인정위원회(KAN)의 인정을 받았을 것, 그리고
- b. 장관의 지정을 받았을 것

(3) 제6조제2항제b호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은 다음 기관이 수행한다.

- a. 국내 시험소 또는
- b. 해외 시험소

(4) 제3항제a호에 따른 국내 시험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제2조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의 범위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 인정위원회(KAN)의 인정을 받았을 것, 그리고

- b. 장관의 지정을 받았을 것

(5) 제3항제b호에 따른 해외 시험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국제 인정 협력을 통해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정을 받았을 것

- b. 시험소가 소재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기술 규제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을 것, 그리고

- c. 장관의 지정을 받았을 것

## 제8조

(1) 다음의 경우:

- a.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의 범위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KAN의 인정을 받은 LSPro 또는 시험소가 아직 없으나, 유사한 범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 b.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의 범위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KAN의 인정을 받은 LSPro 또는 시험소가 존재하나,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유사한 범위에 대해 KAN의 인정을 받은 LSPro 및/또는 시험소를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LSPro 및/또는 시험소는 지정일로부터 2(이)년 이내에 고무호스용 SNI 범위에 부합하는 KAN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 (1) 제6조제3항에 따른 SNI 인증서는 다음에 한하여 보유할 수 있다.
- 산업체, 또는
  - 해외 제조업자
- (2) 제1항에 따른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1(한)개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1(한)개의 SNI 인증서를 보유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SNI 인증서에는 1(한)개 이상의 상표를 기재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SNI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오)년이다.
- (5)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SNI 인증서는 1(한)개 상표 협력 제공자 또는 위탁 계약 제공자 각각의 수혜자인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발급된다.

제10조

제9조제1항제a호에 따른 산업체는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KBLI 22191 및/또는 22192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에 대한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최소한 다음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컴파운드 제조기
  - 압출기
  - 고무 컴파운드 가황기, 및
  - 절단기
- 최소한 다음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치수 측정 장비
  - 내파열 시험 장비
  - 연소 시험 장비

4. 인장 시험 장비, 및
5. 내누출 시험 장비
- e.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을 것, 및
- f. SII Nas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11조

- (1) 제9조제1항제b호에 따른 해외 제조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고무호스 제조에 관한 산업 활동을 수행할 것
  - b.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에 대해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c. 최소한 다음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1. 컴파운드 제조기
    2. 압출기
    3. 고무 컴파운드 가황기, 및
    4. 절단기
  - d. 최소한 다음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1. 치수 측정 장비
    2. 내파열 시험 장비
    3. 연소 시험 장비
    4. 인장 시험 장비, 및
    5. 내누출 시험 장비
  - e.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을 것, 및
  - f. 공식 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
- (2) 제1항제f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공식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것
  - b.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상표 사용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을 것
  - c. 공식 대리인이 소재한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
  - d.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한 고무호스 제품의 수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 및

e. SII Nas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것

- (3) 제2항에 따른 공식 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a. 1(한)개 해외 제조업자만을 대리할 것
  - b.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한)개 이상의 해외 제조업자를 대리 할 수 있다.
    1. 공식 대리인과 대리하는 다른 해외 제조업자의 모회사인 경우
    2. 공식 대리인과 대리하는 다른 해외 제조업자와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인 경우
    3. 공식 대리인의 자회사인 경우
- (4) 제3항제b호1목 및 2목에서 말하는 모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고무호스 제조에 관한 산업 활동을 수행할 것, 그리고
  - b.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
- (5) 해외 제조업자는 1(한)개의 공식 대리인만을 임명할 수 있다.
- (6) 해외 제조업자가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식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SNI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 (1)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협력 상표에 대한 SNI 인증서는 상 표 협력 대상 또는 위탁 계약 대상인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소유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상표 협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다.
- a. 상표 협력 제공자와 상표 수혜자 모두 각자의 상표에 대하여 유효한 SNI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 b. 상표 수혜자가 상표 협력 제공자로부터 해당 상표에 대한 고무호스 제 조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을 것
- (3) 제1항에 명시된 위탁 계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 a. 위탁 계약 수혜자가 본인 상표에 대하여 유효한 SNI 인증서를 보유하 고 있을 것, 그리고
  - b. 위탁 계약 수혜자가 위탁 계약 제공자의 상표에 대한 고무호스 제조 라 이선스를 취득하였을 것
- (4) 상표 협력 계약 또는 위탁 계약의 제공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상표 사용 및 책임을 수행하는 공식 대리인 또는 회사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서 취득 절차

제13조

- (1) SNI 인증서 발급 신청 주체는 다음과 같다.
- a. 산업체, 또는
  - b. 공식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해외 제조업자
- SII 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 (2)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가 1(한)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경우, 산업체 및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하여 각 생산시설별로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 (1) 산업체는 제13조제1항제a호에 따라 SII Nas 사이트를 통해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a.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것
  - b. 적합성 평가를 신청할 SNI를 선택할 것
  - c.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를 선택할 것
  - d.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이 발급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 등록증을 업로드할 것
  - e. 다음 자료를 포함한 기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것:
    1. SII 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체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2.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3. KBLI 22191 및/또는 22192에 해당하는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4. SNI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5. SNI 인증서 및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 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6. 생산 공정 흐름도

7. 상표를 포함한 고무호스 제품 정보
8. 생산 설비 목록
9. 시험 장비 목록
10.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항목 목록
11. SNI 마크 부착 예시 이미지
12.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13. 조직도
14. 업무 프로세스

- (2) 산업체가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상표 등록을 한 날로부터 1(일)년 이내에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상표 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1항제d호에 따른 상표 등록증 대신 상표 등록 신청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
- (3) 산업체가 고무호스 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e호제4목에 따른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대신, ISO 9001:2015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
- (4) 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상표 등록 신청서 및/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산업체는 2차 사후관리가 실시되는 시점까지 상표 등록증 및/또는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제15조

- (1) 제13조제1항제b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은 SII Nas 사이트를 통해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a.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것
  - b. 적합성 평가를 신청할 SNI를 선택할 것
  - c.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를 선택할 것
  - d.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이 발급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상표 등록증을 업로드할 것
  - e. 다음 자료를 포함한 기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것:
    1. SII 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2. 해외 제조업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3. 해외 제조업자의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4.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5. SNI 인증서 및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6. 생산 공정 흐름도
7. 고무호스 제품 정보(상표 포함)
8. 생산 설비 목록
9. 시험 장비 목록
10.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항목 목록
11. SNI 마크 부착 예시 이미지
12.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13. 조직도
14. 업무 프로세스

(2) 제1항제e호제2목 및 제3목의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두)부씩 업로드하여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
- b.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

(3) 제1항제e호제6목, 제7목, 제8목, 제9목, 제10목, 제12목, 제13목 및 제14목의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도, 공식 대리인은 다음 법적 자격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공증 문서
- d.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를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가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의해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f.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 (5) 문서의 공증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제a호에 명시된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공증 대상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6) 제1항제d호에서 언급된 상표가 공식 대리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제4항제d호에서 언급된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는 다음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a. 공식 대리인 명의의 상표 등록증, 및
  - b. 해외 제조업자가 공식 대리인의 소유이거나 그 자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제1항에 따른 공식 대리인이 하나 이상의 장소를 보유한 경우, 제4항제f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는 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사무소 주소 또는 연락처 주소 중 하나로 한다.

#### 제16조

- (1) 산업체가 상표 협력에 따라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다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상표 협력 계약의 제공자가 다른 산업체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 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한 KBLI 22191 및/또는 22192에 따른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3. 상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유효한 상표 협력 제공자의 SNI 인증서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을 제공하는 산업체의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상표 협력 수혜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 b. 상표 협력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 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상표 협력 제공자 명의의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3. 상표 협력 제공자의 상표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한 SNI 인증서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상표 협력 수혜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8. 공식 대리인의 법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a) 공식 대리인의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법적 관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공증문서
    -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 f)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2) 제1항제b호제1목 및 제2목의 서류는 다음 요건에 따라 2(두)부씩 업로드해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
- b. 공인 번역가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

#### 제17조

(1)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 협력 계약에 따라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상표 협력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하여 다음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a. 상표 협력 제공자가 산업체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2.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한 KBLI 22191 및/또는 22192 범위의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 3.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하며 해당 상표가 명시된 유효한 SNI 인증서
  -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계약서
  -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을 제공하는 산업체의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 7. 상표 협력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 b. 상표 협력 제공자가 다른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2.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한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 3.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하며 해당 상표가 명시된 유효한 SNI 인증서
  -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것)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상표 협력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 발급)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이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상표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8.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의 법적 자격 증빙 서류:
    -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공증 문서
    - d) 상표권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것)
    - e) 상표권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것)
    - f)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참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1항제b호제1목 및 제2목의 서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2(두)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
  - b.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

### 제18조

- (1) 산업체가 위탁 계약에 따라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위탁 계약 제공자가 산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3.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이 발급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 등록증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 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 b. 위탁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3. 위탁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 등록증(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것)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 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8.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에 대한 법적 자격 증빙 서류:
    -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 c)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공증 문서
    - d) 해외 사업자가 상표권자로서 회사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해외 사업자가 상표권자로서 회사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 (2) 제1항제b호제1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두)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
  - b. 공인 번역가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
- (3) 제1항제a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자인 사업자는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 (4) 제1항제b호제8목에 따른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제19조

- (1) 해외 제조업자가 위탁 계약에 따라 SNI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도, 위탁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a. 위탁 계약 제공자가 산업체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3.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이 발급한 위탁 계약 제공자 명의의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 등록증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 b. 위탁 계약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가 아닌 다른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당국의 확인서
    3. 위탁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 고무호스 상표 등록증(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것)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6. SNI 및 SPPT SNI 취득 전까지는 고무호스를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8.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에 대한 법적 자격 증빙 서류:
    - a)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 b) 사업 허가증 사본
    -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공증문서
    - d) 해외 사업자가 상표권자로서 회사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 e) 해외 사업자가 상표권자로서 회사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 (2) 제1항제b호제1목 및 제2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2(두)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a)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
  - b)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
- (3) 제1항제a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자는 SIINas 계정을 보유하여야 한다.
- (4) 제1항제b호제8목에 따른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14조제1항제e호제4목 및 제15조제1항제e호제4목에서 언급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 a) KAN에 의해 인정을 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및/또는

b) 국제 상호인정협정 체결기관의 인정을 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제21조

- (1) 기관장은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 기입 사항과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한다.
-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업무를 위임한다.
- (3) 제1항에 따른 검토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삼)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22조

- (1) 제21조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장은 SIINas를 통해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에게 보완 및 소명을 요구한다.
- (2)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3)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제2항의 요청기한 내에 보완 또는 소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 (1) 신청서 기입사항 및 첨부서류가 완전하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관장은 이를 SIINas를 통해 LSPro에 전달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LSPro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 (1) LSPro가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LSPro는 그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적합성 감사 실시일
  - b) 인증 체계 및 적합성 감사일
  - c) 감사자 이름
  - d) 샘플 채취 담당자 이름
  - e) 적정성 및 적합성 심사 결과
  - f) 상표
  - g) 사용된 시험소
  - h) SNI 인증서 초안 및 그 부속서

- i) 시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SNI 번호 및 제목
  - 2) 시험 샘플 수령일
  - 3) 시험 실시일
  - 4)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발행일
  - 5) 시험 결과

#### 제25조

- (1) 기관장은 LSPro가 제출한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평가는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를 포함한다.
- (3) 제2항에 따른 평가는 LSPro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장은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를 위임한다.
- (5)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기관장은 LSPro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 (6) 제5항의 기관장의 요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된다.

#### 제26조

- (1) LSPro는 소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소명을 제1항에 언급된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b) 소명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본 장관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기관장은 해당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검토를 승인하지 않으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평가 보고서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본 장관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b) LSPro가 부적합 사항을 시정한 경우,기관장은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에 대해 검증을 승인한다.

#### 제27조

-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의 검증 결과는 전자 서명 형태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전자 서명에는 SIINas 내에서 인증서 정보로 연결되는 전자 링

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전자 서명은 SII 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LSPro에 송부된다.

제28조

- (1) 제24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및 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LSPro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자 서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이내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SNI 인증서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전자 서명이 부착되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LSPro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전자 서명이 부착된 SNI 인증서를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송부한다.
  - b) 전자 서명이 부착된 SNI 인증서를 SII Nas에 업로드한다.
- (4) 제1항에 따른 SNI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의 명칭 및 주소
  - b) 공장 소재지
  - c) 상표
  - d) SNI 번호 및 제목
  - e) SNI 인증서 발급일
  - f)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 (5) 제4항의 정보 외에, 수입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인증서에는 공식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공식 대리인의 창고 소재지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 (6) 상표 협력 계약이 있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외에도 다음의 정보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 a)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산업체의 명칭 및 주소, 또는
  - b)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 (7)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외에도 다음의 정보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 c) 위탁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 d) 위탁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제29조

- (1) SNI 인증서 취득 절차는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인증 체계에 따른다.
- (2) 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의 필수적인 부분인 별지에 나열되어 있다.

### 제3부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마크(SNI 마크) 사용 승인

##### 제30조

- (1) 제2조제1항에 따라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인증서를 보유한 고무호스에는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이 부착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의 부착은 기관장의 SNI 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 (3) 제2항의 SNI 마크 사용 승인은 SPPT SNI의 형식으로 부여된다.

##### 제31조

- (1) 제30조제3항에 따른 SPPT SNI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여된다.
  - a) 산업체, 또는
  - b) 공식 대리인
- (2)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SPPT SNI는 다음 대상에게 수여된다.
  - a)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산업체
  - b)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
  - c) 위탁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 또는
  - d) 위탁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SPPT SNI의 유효기간은 1(일)년이다.
- (4)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SPPT SNI는 매 1(일)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제32조

- (1)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SPPT SNI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장에게 SPPT SNI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 시, SPPT SNI 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SIIN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것
  - b) 다음 해당 서류를 업로드할 것:
    - 1) 산업체의 경우: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 계획, 전년도 생산 실적

에 대한 증빙 자료

- 2) 공식 대리인의 경우: 해외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 증빙, 수입 계획, 최근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자료
- (4) 제3항제b호제1목에 따른 전년도 생산 실적 또는 제3항제b호제2목에 따른 최근 연간 수입 실적 증빙은 최초로 SPPT SNI 발급을 신청하는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한다.

제33조

- (1)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산업체, 상표 협력 계약을 제공한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 위탁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 위탁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은 SPPT SNI 발급을 위해 기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SPPT SNI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SPPT SNI 신청인은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SIIN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것, 그리고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업로드할 것:
    -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에 따라 생산 예정인 제품 수량에 대한 증빙, 및
    -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 수혜자가 산업체인 경우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을 통해 전년도에 생산된 실적, 또는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 수혜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최근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증빙
- (4) 제3항제b호제2목에 따른 전년도 생산 실적 또는 최근 연간 수입 실적 증빙은 최초로 SPPT SNI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한다.

제34조

- (1) 기관장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에 대해 평가를 수행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평가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평가팀을 구성한다.
- (3) 제2항에 따른 팀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기관 본청, 및

b) 고무호스 산업을 관리하는 산업부 소속 총국

제35조

- (1) 제34조에 따른 평가 수행 시 평가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 a)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간의 일치 여부 확인, 그리고
  - b) 신청된 SNI 마크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2)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 a) 신청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류 간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및/또는
  - b) 제출된 SNI 마크 사용 신청 내용이 첨부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팀은 SPPT SNI 신청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3) SPPT SNI 신청인은 소명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3(삼)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평가팀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 (1)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SPPT SNI 신청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a)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b) SPPT SNI 발급 신청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및/또는 부적격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기관장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
- (2) 제1항에 따른 SPPT SNI 발급 신청의 거부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된다.

제37조

- (1)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이 적합하고, 완전하며, 정확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 b) SPPT SNI 신청인이 부적합 사항 및/또는 부적격 사항을 시정한 경우, 기관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팀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5(오)영업일 이내에 SPPT SNI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SPPT SNI의 발급은 전자 서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전자 서명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전자 링크가 첨부되어야 한다.
  - a) SNI 인증서에 관한 정보
  - b) 제품에 관한 정보, 및

c) SPPT SNI의 유효기간

- (4) 제2항에 따른 SPPT SNI와 전자 서명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38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규정한 SPPT SNI 발급 신청 절차는 SPPT SNI의 간접 신청 절차에도 준용한다.

제39조

- (1)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의 부착 방식은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인증 체계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용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의 필수적인 부분인 별지에 나열되어 있다.

제4부

사후관리

제40조

- (1) 제28조제1항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한 LSPro는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행한다.  
(3) 제2항의 정기 사후관리는 1(일)년에 1(일)회 실시한다.  
(4) 제2항의 특별 사후관리는 다음의 경우 수시로 실시된다.  
a. 개인, 일반 국민, 기관 및/또는 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또는  
b. 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5) 제3항의 정기 사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LSPro는 해당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 사후관리 일정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 (1) LSPro는 정기 사후관리 및 특별 사후관리의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후관리 시행일  
b. 검사자 성명  
c. 샘플 채취자 성명  
d. 사후관리 수행 결과, 및  
e.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및 일자

- (3) 기관장은 정기 및 특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4) 정기 사후관리 결과의 평가를 위해 기관장은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 (5) 특별 사후관리 결과의 평가를 위해 기관장은 평가팀을 구성한다.
- (6) 제5항의 평가팀은 최소한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기관 소속 공무원, 및
  - b. 산업표준 감독관(PPSI)
- (7) 제4항의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LSPro가 제출한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 검토, 및
  - b. 사후관리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8) 산업 표준화의 수립, 시행 및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와 팀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제42조

- (1) 제41조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후관리 관련 문서 및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기관장은 LSPro에게 소명, 수정 및/또는 문서 보완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 (3) 제1항에 따른 LSPro는 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최대 30(삼십)일 이내에 소명, 수정 및/또는 문서 보완을 하여야 한다.
-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LSPro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본 장관령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기관장은 LSPro에 SNI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 제43조

- (1) 제41조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후관리 관련 문서 및 절차가 본 장관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기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적합성 평가의 이행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 (2) 제1항에 따른 검토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 제44조

제40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LSPro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다.

제45조

- (1) SNI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산업체가 상표 등록 증빙 및/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LSPro는 2차 사후관리 시 산업체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a. 상표 등록 증빙을 대체할 상표 등록증, 및/또는
  - b.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확인서를 대체할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2) 제1항의 사후관리 시점에 산업체가 상표 등록증 및 ISO 9001:2015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를 아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LSPro는 해당 SNI 인증서를 취소한다.

제46조

- (1) 사후관리 시행 절차는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인증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제1항의 고무호스 SNI 인증 체계는 본 장관령의 필수적인 부분인 별지에 나열되어 있다.

제4장  
책임

제47조

- (1) 제31조제1항제a호에 따른 산업체가 자사 상표로 고무호스를 제조 및 유통하는 경우,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고무호스의 품질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 (2) 제31조제1항제b호에 따른 공식 대리인이 해외 제조업자의 상표로 고무호스를 유통하는 경우,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고무호스의 품질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

제48조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고무호스의 품질 보증 책임은 고무호스에 대한 SNI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a. 공장에서 산업체가 생산한 고무호스에 대해서는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을 수령한 산업체가 책임을 진다.
- b.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한 고무호스가 공식 대리인의 창고 및/또는 통제 가능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의 수혜

- 자인 해외 제조업자를 대표하는 공식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또는
- c. 제a호의 산업체 공장 외부 또는 제b호의 공식 대리인 보관 장소 외부에서 유통 중인 고무호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가 책임을 진다.
1. 제31조제2항제a호에 따른 상표 협력 제공 산업체
  2. 제31조제2항제b호에 따른 상표 협력 제공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
  3. 제31조제2항제c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 사업자, 또는
  4. 제31조제2항제d호에 따른 위탁 계약 제공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

## 제5장 기타 규정

### 제49조

- (1) 해외 제조업자가 생산한 고무호스 제품은 유통 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제11조제2항제c호에 따라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 제품의 반입은 기술 검증 또는 기술 조사로 수행한다.
- (3) 제2항에 따른 기술 검증 또는 기술 조사는 수입 문서에 명시된 배송 주소와 제1항에 명시된 공식 대리인이 관리하는 창고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4) 제3항에 따른 기술 검증 또는 기술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 제50조

SNI 인증서 및/또는 SPPT SNI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생산 또는 수입된 고무호스 제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전히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다.

- a. 내수 생产业인 경우, SNI 인증서 및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일 것
- b. 수입품인 경우, SNI 인증서 및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그리고
- c. 제품의 품질이 본 장관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제51조

고무호스에 대한 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사후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 제52조

SII Nas 계정을 보유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 제53조

LSPro 및 시험소가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공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가 부담한다.

### 제6장

#### 경과 규정

### 제54조

- (1)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로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75/M-IND/PER/9/2015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여전히 유효한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인증서는 본 장관령에 따른 SNI 인증서 및 SPPT SNI로 간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고무호스 SNI 인증서는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최대 12(십이) 개월 이내에 본 장관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제55조

본 장관령 시행 전에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적합성 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본 장관령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제56조

- (1)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로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75/M-IND/PER/9/2015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고무호스는 본 장관령에 따른 전자 서명 부착 의무에서 제외된다.
- (2) 제1항에 따라 국내 생산 고무호스로서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수입된 고무호스로서 본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세관 절차가 완료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될 수 있다.

제7장  
종결 규정

제57조

본 장관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다음 규정:

- a.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201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79호)로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산업부 장관령 제75/M-IND/PER/9/2015호(201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447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 및
- b.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201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79호)로 LPG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15/M-IND/PER/1/2015호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산업부 장관령 제75/M-IND/PER/9/2015호(201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447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시행 규정  
은 폐지되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58조

본 장관령은 공포일로부터 6(육)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본 장관령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고시할 것을 명한다.

2024년 10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제정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

(서명)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AGUS GUMIWANG KARTASASMITA)

2024년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공포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법령총국  
직무대리(PLT)

(서명)

阿森 N. 블리야나  
(ASEP N. MULYANA)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741호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  
인도네시아 산업부 총괄사무국  
법무국장

이까나 요시에 아르디아닝시  
(Ikana Yossye Arrianingsih)

별지

액화석유가스용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에 관한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령 제57호

고무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체계

A. 적용 범위

본 인증 체계는 고무호스에 대한 SNI 의무 적용을 목적으로 한 최초 인증, 사후관리 및 재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B. 준거 문서

본 체계의 준거 문서는 다음과 같다.

- a. SNI 7213:2014, LPG 가스레인지용 고무호스, 및
- b. 산업 표준화에 관한 2022년 산업부 장관령 제45호

C.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유형 5(오) 인증 체계를 사용한다.

D. 인증 단계

인증의 시행은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No.	규정	상세 설명	
<b>1단계: 선발</b>			
1.	신청/요청	a.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b. SIINas 페이지에서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체용  1)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입력한다. 2)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SNI를 선택한다. 3)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LSPro를 선택한다. 4)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제11(십일)류 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에 대한 상표권 소유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5) 다음 각 항목의 기타 첨부 문서를 첨부한다.
		a) SIINas 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체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산업체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c) KBLI 22191 및/또는 22192 에 해당하는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a) SIINas 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한 신청서 b) 해외 제조업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c)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d)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No.	규정	상세 설명	
	e)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산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e)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f) 생산 공정 절차	f) 생산 공정 절차	
	g) 상표를 포함한 고무호스 제품 정보	g) 상표를 포함한 고무호스 제품 정보	
	h) 생산 설비 목록	h) 생산 설비 목록	
	i) 시험 장비 목록	i) 시험 장비 목록	
	j)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	j)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	
	k) SNI 마크 부착에 대한 도해(그림 설명)	k) SNI 마크 부착에 대한 도해(그림 설명)	
	l)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l)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	
	m) 조직도, 및	m) 조직도	
	n) 업무 프로세스	n) 업무 프로세스, 및	
		o)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 i.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ii. 사업 허가증 iii.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No.	규정	상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v.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li> <li>v.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li> <li>vi.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li> </ul>
	산업체가 상표 협력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상표 협력 수혜자인 산업체는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필요 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 협력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상표 협력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는 또한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a. 상표 협력의 제공자가 다른 산업체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표 협력의 제공자가 산업체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No.	규정	상세 설명	
	2) 상표 협력 제공자의 KBLI 22191 및/또는 22192에 해당하는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2) 상표 협력 제공자의 KBLI 22191 및/또는 22192에 해당하는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3) 상표 협력 대상인 상표가 기재된 상표 협력 제공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3) 상표 협력 대상인 상표가 기재된 상표 협력 제공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인 산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인 산업체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No.	규정	상세 설명	
	7) 상표 협력 대상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또는	7) 상표 협력 대상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또는	
	b. 상표 협력 제공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b. 상표 협력 제공자가 다른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1) 상표 협력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한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2) 상표 협력 제공자가 보유한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상표 협력 대상인 상표가 기재된 상표 협력 제공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3) 상표 협력 대상인 상표가 기재된 상표 협력 제공자의 유효한 SNI 인증서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b>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b>	4)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5) 상표 협력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No.	규정	상세 설명	
	7)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 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SII Nas를 통해 출력하여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대표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8) 상표 협력 수혜자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	7) 상표 협력 수혜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	
	9)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	8)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b) 사업 허가증	b) 사업 허가증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No.	규정	상세 설명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f)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e) 공식 대리인의 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산업체가 위탁 계약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탁 계약의 수혜자인 산업체는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해외 제조업자가 위탁 계약을 목적으로 SNI 인증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받는 해외 제조업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a. 위탁 계약 제공자가 (기존 산업체가 아닌) 다른 산업체인 경우	a. 위탁 계약 제공자가 (기존 산업체가 아닌) 다른 산업체인 경우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2) 위탁 계약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	
	3) 위탁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증으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	3) 위탁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증으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	

No.	규정	상세 설명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 b. 위탁 계약 제공자가 해외 산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7) 위탁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 b. 위탁 계약 제공자가 해외 산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1)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2) 위탁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2) 위탁 계약 제공자가 보유한 고무호스 제조 산업 활동 범위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현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No.	규정	상세 설명	

	<p>3) 위탁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증으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p>	<p>2) 위탁 계약 제공자가 소유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증으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등록증</p>
	<p>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4)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p>
	<p>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5) 위탁 계약 제공자가 위탁 계약 수혜자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p>	<p>6) SNI 인증서와 SPPT SNI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무호스 제품을 유통, 판매 및/또는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SIINas를 통해 출력하여 위탁 계약 제공자가 서명하고 인지가 부착된 서약서</p>
	<p>7) 위탁 계약 수혜자인 산업체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p>	<p>7) 위탁 계약 수혜자인 해외 제조업자가 보유한 유효한 SNI 인증서, 그리고</p>
	<p>8) 위탁 계약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p>	<p>8) 상표 협력 제공자의 공식 대리인 요건 충족을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다.</p>

No.	규정	상세 설명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a) 회사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b) 사업 허가증	b) 사업 허가증 사본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c)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식 대리인 임명 증명서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 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d)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 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된 계약서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 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e) 해외 제조업자가 상표권자로 공식 대리인 에게 부여한 제11(십일)류 및/또는 제17(십칠)류 고무호스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 증명서로서,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c. 기관장은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첨부한 신청서 기재사항 및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d. 검토 결과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기관장은 SII Nas를 통해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에게 소명 및/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		
	e.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5(오)영업일 이내에 소명 및/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소명 및/또는 서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무효로 간주된다.		

No.	규정	상세 설명
		<p>g. SNI 인증서 발급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서류가 적합하고 완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관장은 SIINas를 통해 해당 내용을 LSPro에 전달한다.</p> <p>h. LSPro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LSPro에 제출해야 한다.</p> <p>참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체 보유 상표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표 등록증의 소유자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와 동일한 경우</li> <li>2) 상표 등록증의 소유자가 회사 설립등기에 명시된 경우(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li> <li>3) 상표 등록증의 소유자와 SNI 인증 신청 회사가 동일한 다국적 기업의 일부인 경우, 또는</li> <li>4) 상표가 원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된 경우(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li> </ol> </li> <li>2. 공식 대리인이 상표 소유자이자 해외 제조업자의 모회사인 경우, 공식 대리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록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li> <li>3. 산업체가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표 등록 증빙, 및/또는</li> <li>b.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확인서</li> </ol> <p>해당 산업체는 2차 사후관리 시점까지 상표 등록증 및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p> </li> </ol>

No.	규정	상세 설명
		<p>4. 공식 대리인의 경우, 해외 제조업자의 설립등기 및 그 변경등기 사본, 고무호스 산업 활동에 대한 사업 허가증 또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사본을 각 2(두)부씩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경제 분야의 외교관 또는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공증한 원본 1(한)부</li> <li>2).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1(한)부</li> </ol> <p>5. 공식 대리인의 경우, 생산 공정 흐름도, 상표를 포함한 고무호스 제품 정보, 생산 설비 목록, 시험 장비 목록,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 ISO 9001:2015에 따른 관리 목록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p> <p>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KAN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관, 및/또는</li> <li>b. 국제 인정 협력을 통해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기관</li> </ol> <p>7. 상표 협력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표 협력 제공자와 수혜자는 각자의 상표에 대해 유효한 SNI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li> <li>b. 상표 협력 수혜자는 상표 협력 제공자의 상표에 따른 고무호스를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한다.</li> <li>c. 상표 협력 제공자 또는 수혜자가 해외 제조업자일 경우, 해외 제조업자는 반드시 공식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li> <li>d. 공식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li> </ol>

No.	규정	상세 설명					
		<p>8. 위탁 계약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위탁 계약 수혜자는 본인의 상표에 대해 유효한 SNI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li> <li>b. 위탁 계약 수혜자는 위탁 계약 제공자의 상표에 따른 고무호스를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아야 한다.</li> <li>c. 산업체는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li> <li>d. 위탁 계약 제공자는 회사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li> <li>e. 회사 대리인은 SIINas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li> </ul> <p>9. 고무호스 생산에 대해 일부 공정이 주요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공정이 제품의 품질 요건과 관련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정 또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주요 장소의 일부로 간주한다.</p>					
2.	적용된 품질 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15					
3.	감사 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업체용</th> <th>해외 제조업자용</th> </tr> </thead> <tbody> <tr> <td>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4(사)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td> <td>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6(육)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산업체용	해외 제조업자용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4(사)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6(육)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산업체용	해외 제조업자용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4(사)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감사 기간의 최소 기준: a. 적합성 감사, 1(일)인일(man-days) b. 신규 또는 재인증을 위한 적합성 감사는 6(육)인일(man-days), 샘플 채취 시간은 제외한다.						

No.	규정	상세 설명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기 감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li> <li>b.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감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li> <li>c. 감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감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li> </ul>
4.	감사 인원, 샘플 채취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관련 또는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li> <li>b.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일 것</li> <li>c.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li> <li>d. 관련 법규를 이해할 것</li> <li>e. SII Nas를 통해 장관이 등록할 것, 그리고</li> <li>f. 임무를 부여한 LSPro에 등록되어 있을 것</li> </ul>
5.	사용되는 시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사용되는 시험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도네시아 국내 시험소, 또는</li> <li>2) 해외 시험소</li> </ul> </li> <li>b. 인도네시아 국내 시험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NI 7213:2014의 적용 범위에 따라 KAN의 인증을 받은 기관일 것, 그리고</li> <li>2) 장관의 지정을 받을 것.</li> </ul> </li> </ul> <p>참고:</p> <p>고무호스의 적용 범위에 따라 KAN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고무호스에 대한 SNI에 명시된 일부 또는 전체 시험 절차에 대해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p>

No.	규정	상세 설명
		<p>c. 해외 시험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 인정 협력을 통해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시험 범주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것</li> <li>2) 시험소가 소재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기술 규제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을 것, 그리고</li> <li>3) 장관의 지정을 받았을 것</li> </ol> <p>d. 국내 시험소의 시험 담당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분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일 것</li> <li>2)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국민일 것</li> <li>3) 인도네시아어에 능통할 것</li> <li>4) 관련 법규를 이해할 것, 그리고</li> <li>5) 시험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시험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을 것</li> </ol>
제2단계: 결정		
1.	1단계 감사 (적정성 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선발 단계에서 제출한 문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시한다.</li> <li>b. 2단계 감사(적합성 감사)를 수행할 팀 또는 팀의 대리인이 수행한다.</li> <li>c. 행정 문서 검토를 수행한다.</li> </ol>

No.	규정	상세 설명
		<p>d. 다음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추가 문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검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 지침서</li> <li>2) 품질 계획서</li> <li>3) 생산 공정 흐름도</li> <li>4) 최신 내부 감사 보고서</li> <li>5) 최신 경영 검토 회의 보고서</li> <li>6) 조직도</li> <li>7) 위치 지도</li> <li>8) 생산 시설 목록</li> <li>9) 시험 장비 목록</li> <li>10) ISO 9001:2015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 목록</li> <li>11) 업무 프로세스, 및</li> <li>12)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품질 관리 목록</li> </ul>
		<p>e.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와 문서화된 정보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확인한다.</p> <p>f. 최소한의 생산 시설 및 시험 장비(품질 관리 장비)를 포함한 생산 공정 시설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한다.</p>
2.	2단계 감사 (적합성 감사)	<p>a. 2단계 감사(적합성 감사)는 1단계 감사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수행한다.</p> <p>b. 감사팀장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준비한 감사 계획 및 샘플 채취 계획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7213:2014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p>

No.	규정	상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감사팀의 최소 1(한)명은 고무호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li> <li>d.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사는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사자가 수행해야 한다.</li> </ul>
3.	감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최초 인증 또는 재인증 시, 감사는 조직의 모든 기능 시스템 요소에 대해 수행한다.</li> <li>b. 감사는 고무호스 생산 공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행한다.</li> <li>c. 생산 공정 감사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일관성은 생산 현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생산 평가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절차</li> <li>2) 생산 전/후에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li> <li>3)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장의 샘플 채취 및 시험 절차가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한지</li> <li>4) 이 SNI 인증 문서의 F항에 따른 고무호스 생산 공정 관리 여부</li> <li>5) 공장이 불량 제품을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li> <li>6) 감사팀은 신청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체 및 해외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에 대한 설비를 검증한다.</li> </ul> </li> </ul>
4.	감사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고무호스 및 보강용 금속(있는 경우)에 대해 원자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li> <li>b. 고무호스에 관한 SNI F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생산 공정 및 관련 장비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li> </ul>

No.	규정	상세 설명
		<p>c. 고무호스를 생산하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생산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파운드 제조기</li> <li>2) 압출기</li> <li>3) 고무 컴파운드 가황기, 및</li> <li>4) 절단기</li> </ol> <p>d.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다음 같은 품질 관리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수 측정 장비</li> <li>2) 내파열 시험 장비</li> <li>3) 연소 시험 장비</li> <li>4) 인장 시험, 및</li> <li>5) 내누출 시험 장비</li> </ol> <p>e. 시험 장비의 교정 여부</p> <p>f. 생산 공정 중 검사(공정 중 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p> <p>g. 출고 전 검사(출고 품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p> <p>h. 마킹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p>
5.	부적합 범주	<p>a. 주요 부적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적합이 제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SNI 7213:2014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SPro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 간 합의에 따라 최대 3(삼)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li> <li>2)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부적합의 경우, 최대 1(일)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부적합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li> </ol>

No.	규정	상세 설명
		b. 경미한 부적합은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시정조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이)개월의 시정 기간 동안 부적합 원인 분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6. 샘플 채취		a. 샘플 채취 담당자는 샘플 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시험 샘플의 채취는 생산 공정 마지막 단계 또는 생산 창고에서 실시한다.
		c. 샘플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채취하며, 감사팀장 및 산업체가 이를 승인한 샘플 채취 보고서를 작성한다.
		d. 샘플은 무작위로 10(열)개를 채취하며, 5(다섯)개는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5(다섯)개는 공장에 보관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e. 샘플은 각 상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되어야 한다.
		f. 채취된 샘플은 포장하고, 시험 샘플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후 봉인하여 보관한다.
		참고: 생산 공장 보관용 샘플은 라벨을 부착한 후, SNI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시험 방법	고무호스에 대한 시험은 SNI 7213:2014에 따라 수행한다.
8.	시험 결과 보고서	시험 결과 보고서에는 SNI 7213:2014의 규정에 따른 품질 기준 및 시험 결과를 명시한다.

No.	규정	상세 설명
	3단계: 검토 및 결정	
1.	감사 보고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감사 보고서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검토자는 고무호스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선정 및 결정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li> <li>b. 검토자는 감사 보고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다.</li> <li>c. 검토 결과는 SNI 인증서 발급 결정을 위한 권고사항 자료로 활용된다.</li> <li>d. 시험 결과에 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LSPro의 요청에 따라 전체 요소에 대한 재시험을 위한 샘플 재채취가 이루어진다.</li> <li>2) 재시험 결과(제1항에 따른)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NI 인증서 발급은 불가하다.</li> <li>3) 샘플 재채취는 최대 1(일)회에 한한다.</li> <li>4) 샘플 재채취는 LSPro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업체가 30(삼십)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 인증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li> <li>5) 재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 절차는 실패로 간주된다.</li> </ul> </li> </ul> <p>참고:</p> <p>시험소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 간의 모든 시험 및 시정조치 관련 소통은 반드시 LSPro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p>
2.	인증 결정	<p>LSPro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SNI 인증서 발급, 또는</li> <li>b. 발급 거부</li> </ul>

No.	규정	상세 설명
4단계: 라이선스		
1.	SNI 인증서 발급	<p>a. LSPro는 SNI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결과를 SIINas를 통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b. 제a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단계 감사(적정성 감사) 실시 일자</li> <li>2) 인증 체계 및 2단계 감사(적합성 감사) 실시 일자</li> <li>3) 감사자 이름</li> <li>4) 샘플 채취 담당자의 이름</li> <li>5) 적정성 감사 및 적합성 감사의 결과</li> <li>6) 상표</li> <li>7) 사용된 시험소</li> <li>8) 발급 예정인 SNI 인증서의 초안 및 그 첨부 서류, 그리고</li> <li>9)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 결과 보고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SNI 번호 및 제목</li> <li>b) 샘플 접수일</li> <li>c) 시험 실시일</li> <li>d) 시험 결과 보고서 번호 및 일자, 그리고</li> <li>e) 시험 결과</li> </ol> </li> </ol> <p>c. 기관장은 LSPro가 제출한 적합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p> <p>d.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장은 산업 표준화의 수립, 적용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한다.</p>

No.	규정	상세 설명
		e.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기관장은 LSPro에 소명을 요청한다.
		f. 기관장의 요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g. LSPro는 기관장의 요청일로부터 5(오)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h. LSPro가 1)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2) 명확한 소명을 제출했으나, 이 규정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관장은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검토를 거부하며,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
	i.	다음과 같은 경우: 1) 검토 결과 적합성 평가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확인, 또는 2) LSPro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기관장은 LSPro가 수행한 적합성 평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다.
	j.	적합성 평가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는 전자 서명 형태로 제공한다.
	k.	전자 서명은 SIINas에 있는 인증서 정보로 연결되는 전자 링크를 포함한다.
	l.	전자 서명은 SIINas를 통해 LSPro에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m.	적합성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LSPro는 SNI 인증서를 발급한다.
	n.	SNI 인증서는 반드시 전자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o.	SNI 인증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No.	규정	상세 설명	
		산업체용	해외 제조업자용
		1) 산업체의 이름 및 주소 2) 공장 주소 3) 상표 4) SNI 번호 및 제목 5) SNI 인증서 발급일, 및 6)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1) 해외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 2) 공장 주소 3) 공식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4) 공식 대리인의 창고 주소 5) 상표 6) SNI 번호 및 제목 7) SNI 인증서 발급일, 및 8)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
	p.	상표 협력이 있는 경우, 제o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SNI 인증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표 협력을 제공한 산업체의 이름 및 주소, 또는 2) 상표 협력을 제공한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q.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제o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도 SNI 인증서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계약을 제공한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2) 위탁 계약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회사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r.	제o항에 명시된 SNI 인증서는 1(한)개의 생산지에만 발급할 수 있다.	
	s.	제o항에 명시된 SNI 인증서에는 1(한)개 이상의 상표를 기재할 수 있다.	
	t.	SNI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오)년간 유효하다.	
	u.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SNI 인증서는 1(한)개 상표 협력 제공자 또는 위탁 계약 제공자 각각의 수혜자인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에게 발급된다.	

No.	규정	상세 설명
2.	SNI 마크 사용 승인서 (SPPT SNI) 발급	<p>a.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이 부착될 예정인 고무호스 제품은 기관장으로부터 SNI 마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 SNI 마크 사용 승인은 SPPT SNI의 형태로 부여된다.</p> <p>c. SPPT SNI 발급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체</li> <li>2)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li> <li>3)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 상표 소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표 협력을 제공하는 산업체</li> <li>b) 상표 협력을 제공하는 해외 제조업자의 공식 대리인</li> <li>c) 위탁 계약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li> <li>d) 해외 소재 위탁 계약 제공자의 회사 대리인</li> </ol> </li> </ol> <p>d. SPPT SNI 발급 신청을 할 때,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IINas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입력한다.</li> <li>2) 다음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산업체의 경우,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 계획 및 전년도 생산 실적에 대한 증빙, 또는</li> <li>b) 공식 대리인의 경우, 해외 제조업자의 생산 능력, 수입 계획 및 최근 수입 실적 증빙</li> </ol> </li> </ol> <p>참고:</p> <p>최초로 SPPT SNI 발급 신청을 하는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경우, 전년도 생산 실적 및 최근 수입 실적에 관한 증빙은 제출이 면제된다</p>

No.	규정	상세 설명
		<p>e.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이 있을 경우, SPPT SNI 발급 신청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II Nas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한다.</li> <li>2) 다음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에 따라 생산될 제품의 수량 증명서, 및</li> <li>b) 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에 따라 수혜자가 산업체인 경우 전년도의 생산 실적, 수혜자가 해외 제조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 연간 수입 실적에 대한 증빙</li> </ol> </li> </ol>
		<p>참고:</p> <p>상표 협력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생산 실적 또는 직전 연도의 수입 실적은 SPPT SNI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p>
		<p>f. 기관장은 SPPT SNI 발급 신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p>
		<p>g.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장은 팀을 구성한다.</p>
		<p>h. 팀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 본청, 및</li> <li>2) 고무호스 산업을 관리하는 산업부 소속 총국</li> </ol>
		<p>i.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팀은 다음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간의 일치 여부 검토, 및</li> <li>2) 신청한 SNI 마크 사용의 적정성 평가</li> </ol>
		<p>j.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간의 불일치, 및/또는</li> <li>2) SNI 마크 사용과 제출 서류 간의 부적합성이 있을 경우, 평가팀은 SPPT SNI 신청인에게 명확한 소명을 요청한다.</li> </ol>

No.	규정	상세 설명
		k. SPPT SNI 신청인은 명확한 소명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삼)영업일 내에 소명을 제출해야 한다.
		l. 평가팀은 SPPT SNI 발급 신청을 받은 후 최대 5(오)영업일 내에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m. SPPT SNI 신청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1)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명확한 소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2) 신청인이 해당 불일치 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 기관장은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한다.
		n.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 거부는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o.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1) SPPT SNI 마크 사용 승인 신청이 적합하고 서류가 완전하다고 평가된 경우, 또는 2) SPPT SNI 신청인이 불일치 또는 부적합 사항을 시정한 경우, 기관장은 평가팀의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5(오)영업일 내에 SPPT SNI를 발급한다.
		p. SPPT SNI 발급 시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q. 전자 서명에는 다음의 전자 링크가 포함된다. a. SNI 인증 정보 b. 제품 정보, 및 c. 발급된 SPPT SNI에 명시된 유효기간
		r. SPPT SNI와 전자 서명은 SIINas를 통해 발급된다.

No.	규정	상세 설명	
5단계: 사후관리			
1.	인증 요건 검토	a. LSPro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인증 요건의 유효성 2) 제품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의 충족 3) 최초 인증 시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산업체는 ISO 9001:2015 인증서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b. 사후관리 및 샘플 채취 활동은 1(일)년에 1(일)회 실시한다.	
		<b>참고:</b> 최초 인증 또는 1차 사후관리 당시 상표 등록증 대신 상표 등록 증빙 및/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확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한 산업체의 경우, 2차 사후관리 시에는 상표 등록증 및/또는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감사 기간	산업체용	해외 제조업자용
		사후관리에 대한 적합성 감사의 최소 소요 기간은 4(사)인일(man-days)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사후관리에 대한 적합성 감사의 최소 소요 기간은 6(육)인일(man-days)이며, 샘플 채취 기간은 제외한다.
		<b>참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상기 감사 기간에는 출장 시간 및 격리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li> <li>b.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자가 샘플 채취를 겸하는 경우, 샘플 채취는 감사 기간 외에 수행한다.</li> <li>c. 감사 및/또는 샘플 채취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감사 및/또는 샘플 채취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자 또는 샘플 채취 담당자는 LSPro의 소재지로 복귀해야 한다.</li> </ul>	

No.	규정	상세 설명
3.	2단계 감사 (적합성 감사)	a. 2단계 감사(적합성 감사)는 이전 감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이 모두 해결된 경우에 진행한다.
		b. 감사팀장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준비한 감사 계획 및 샘플 채취 계획이 신청된 SNI 7213:2014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 감사팀 중 최소 1(한)명은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d.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절차에 대한 감사는 고무호스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4.	감사 범위	a. 감사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의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 공정과 제품 품질 관리 절차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b. 감사는 생산 공정 진행 중에 수행되며, 인증을 신청한 고무호스 제품 중 하나의 유형을 대표로 실시할 수 있다.
		c. 생산 공정 감사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일관성은 생산 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며, 생산 공정에 대한 감사는 다음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1) 제품 검증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절차
		2) 제품 생산 전/후 모니터링,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3) 공장에서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샘플 채취와 시험 절차
		4) 본 SNI 인증 절차의 'F'항에 따른 고무호스 생산 공정 관리

No.	규정	상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원자재에 대한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본 SNI 인증 절차의 'F'항에 따른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기준에 부합하는 고무호스의 생산 공정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고무호스를 생산하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 생산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컴파운드 제조기</li> <li>2) 압출기</li> <li>3) 고무 컴파운드 가황기, 및</li> <li>4) 절단기</li> </ul> </li> </ul>
5.	감사 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 QC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수 시험 장비</li> <li>2) 내파열 시험 장비</li> <li>3) 연소 시험 장비</li> <li>4) 인장 시험 장비, 및</li> <li>5) 내누출 시험 장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 시험 장비의 교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 생산 공정 중 검사(공정 중 품질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 출고 전 검사(출고 품질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 마킹 작업</li> </ul>

No.	규정	상세 설명
6.	부적합 범주	<p>a. 주요 부적합:</p> <p>1) 부적합이 제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SNI 7213:2014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LSPro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 간 합의에 따라 최대 3(삼)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p> <p>2)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부적합의 경우, 최대 1(일)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부적합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 경미한 부적합은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는 시정조치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2(이)개월의 시정 기간 동안 부적합 원인 분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p>
7.	샘플 채취	<p>a. 샘플 채취 담당자는 샘플 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 시험 샘플의 채취는 생산 공정 마지막 단계 또는 생산 창고에서 실시한다.</p> <p>c. 샘플은 샘플 채취 담당자가 채취하며, 감사팀장 및 산업체가 이를 승인한 샘플 채취 보고서를 작성한다.</p> <p>d. 샘플은 무작위로 10(열)개를 채취하며, 5(다섯)개는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5(다섯)개는 공장에 보관용으로 분류해야 한다.</p> <p>e. 샘플은 각 상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되어야 한다.</p> <p>f. 채취된 샘플은 포장하고, 시험 샘플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후 봉인하여 보관한다.</p> <p>참고: 생산 공장 보관용 샘플은 라벨을 부착한 후, SNI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산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p>

No.	규정	상세 설명
8.	시험 방법	고무호스에 대한 시험은 SNI 7213:2014에 따라 수행한다.
9.	시험 결과 보고서	시험 결과 보고서에는 SNI 7213:2014의 규정에 따른 품질 기준 및 시험 결과를 명시한다.
10.	감사 보고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감사 보고서와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검토자는 고무호스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선정 및 결정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li> <li>b. 검토자는 감사 보고서 및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다.</li> <li>c. 검토 결과는 SNI 인증서 발급 결정을 위한 권고사항 자료로 활용된다.</li> <li>d. 시험 결과에 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LSPro의 요청에 따라 전체 요소에 대한 재시험을 위한 샘플 재채취가 이루어진다.</li> <li>2) 재시험 결과(제1항에 따른)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SNI 인증서 발급은 불가하다.</li> <li>3) 샘플 재채취는 최대 1(일)회에 한한다.</li> <li>4) 샘플 재채취는 LSPro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업체가 30(삼십)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 인증 신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li> <li>5) 재시험 결과가 SN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 절차는 실패로 간주된다.</li> </ul> </li> </ul> <p>참고:</p> <p>시험소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자 간의 모든 시험 및 시정조치 관련 소통은 반드시 LSPro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p>
11.	인증 결정	<p>LSPro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유지</li> <li>b. 정지 또는</li> <li>c. 취소</li> </ul>

E.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의 부착

1.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은 SNI 7213:2014 기준을 충족하는 고무호스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시로 사용한다.
2. SNI 마크 및 전자 서명 부착은 기관장으로부터 SNI 사용 승인(SPPT SNI)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SNI 마크 부착 방법:
  - a. 모든 고무호스 제품 개별 단위에 SNI 마크를 인쇄하여 부착, 그리고
  - b. 포장 라벨은 인쇄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SNI 마크 및 전자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크는 잘 지워지지 않고, 쉽게 확인하고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4. 전자 서명은 고무호스 제품의 각 포장의 SNI 마크 바로 아래 또는 옆에 부착해야 한다.
5. SNI 마크 외에 읽기 쉬우며 잘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 a. 생산년도
  - b. 상표, 및
  - c. 사용압력
6. SNI 마크 및 전자 서명 외에도, 포장에는 읽기 쉬우며 잘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라벨 또는 전자 서명을 부착해야 한다.
  - a. 생산년월
  - b. 상표, 및
  - c. 사용압력

F.	고무호스 생산 공정 관리				
번호	공정 단계/ 검사 항목	시험 방법/ 도구	요구사항	빈도	기록
1	공급업체	공급업체 평가	절차에 따름	매년	평가 결과서
2	원자재	분석 증명서(CoA) 확인	절차에 따름	회사 SOP에 따름	분석 증명서(CoA)
3	컴파운드 제조	혼합 및 계량시간 설정	회사 요구사항에 따 름	회사 SOP에 따름	컴파운드 제조 작업 문서
4	압출	온도 설정	회사 요구사항에 따 름	회사 SOP에 따름	압출 작업 문서
5	라이닝 보강	원사 편직 설정	회사 요구사항에 따 름	회사 SOP에 따름	라이닝 보강 작업 문서
6	가황	시간 및 온도 설정	회사 요구사항에 따 름	회사 SOP에 따름	가황 작업 문서
7	절단	호스 길이 측정	회사 요구사항에 따 름	회사 SOP에 따름	절단 작업 문서
8	고무호스 치수	치수 측정	SNI 7213:2014 기준	회사 SOP에 따름	QC 양식
9	내파열성	파열 저항 시험	SNI 7213:2014 기준	회사 SOP에 따름	QC 양식
10	연소성	연소 시험	SNI 7213:2014 기준	회사 SOP에 따름	QC 양식
11	접착 강도	인장 시험	SNI 7213:2014 기준	회사 SOP에 따름	QC 양식
12	누출 저항성	누출 저항 시험	SNI 7213:2014 기준	회사 SOP에 따름	QC 양식
13	제품 표시	육안 검사	관련 규정에 따름	회사 SOP에 따름	작업 문서
14	생산 및 QC 역량	역량 평가	표준 역량	회사 SOP에 따름	개인역량 평가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

(서명)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AGUS GUMIWANG KARTASASMITA)

Salinan sesuai dengan aslinya  
Sekretariat Jenderal  
Kementerian Perindustrian  
Kepala Biro Hukum,  
Ikana Yossye Ardianingsih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

인도네시아 산업부 총괄사무국

법무국장

이까나 요시에 아르디아닝시

(Ikana Yossye Ardianingsih)